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남창진 의원 (찬성자 48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108 호

다. 발의일자 : 2022. 8. 26

라. 회부일자 : 2022. 9. 02

## 2. 제안이유

- 현재 의용소방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 (조직) 및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 조(조직)에 따라 의용소방대 내에 부장 및 반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직위 임명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또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각 소방서별 동일한 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, 이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의용소방대 대원 중에서 부장, 반장을 임명할 경우에 그 자격과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고, 책임자가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. (안 제7조의2 신설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, 상위법령인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내에서 부장 및 반장을 임명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내부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,

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 2022.03.05.일 소방청의 제도개선 권고(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-1594)<sup>1)</sup>에 따른 후속조치임.

### ■ 의용소방대 연혁 및 운영현황

- 의용소방대<sup>2)</sup>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1958년에 「소방법」 제정으로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음.
- 서울시의 경우 1972년에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」가 제정되었고 2005년에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, ‘조례’라 함)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.

---

1) ‘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개정 필요에 따른 시·도 자치법규 개정 권고’,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-1594, 2022.03.05.

2)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주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,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,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,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음

- 2022년도 기준 ‘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’을 살펴보면,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200대 5,000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음. ([표] 참조)

[표] 2022년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

구 분	내 용
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954.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</li> <li>○ 1958. 3월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명시</li> <li>○ 1972. 12. 20.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정</li> <li>○ 2008.1월 소방기본법에 ‘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’ 설치근거 신설</li> <li>○ 2014. 1. 28. 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”제정 공포(7월29일 시행)</li> </ul>
조직운영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직현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국 총 3,921대, 총 95,654명으로 구성 활동 중</li> <li>- 서울시 총 200대 5,000명으로 구성 활동(정원) / 현원 4,519명</li> </ul> </li> <li>○ 출동실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22. 8월말 총 9,407회, 연인원 24,963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</li> </ul> </li> <li>○ 봉사활동 실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22. 8월말 총 101회, 연인원 341명 참여하여 봉사활동 전개</li> </ul> </li> </ul>
예산확보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편성구분 : 시도 예산을 각 소방서별로 편성</li> <li>○ 예산현황 : 총 30억 7천 5백만원(‘22년)</li> </ul>

- 이들의 금년도 활동실적은 8월말 기준으로 총 9,407회 출동하여 연인원 24,963명이 소방업무를 보조하였고 이 같은 고유 임무수행 이외에도 봉사활동 등으로 총 101회(인원 341명)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.

[표] 서울시 의용소방대 소방업무보조 세부실적 현황 (2022. 8월말 기준)

구분	계	화재진압 업무보조	재난발생 대피보조	구조구급 업무보조	화재예방 업무보조	각종행사 안전지원	주민안전 지원활동	화재예방 홍보 등
건수	9,407	84	56	34	4,604	873	1,028	2,728
인원	24,963	283	58	45	11,295	399	4,171	8,712

[표] 서울시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세부실적 현황(2022.8월말 기준)

구분	계	농어촌 일손돕기	장애인 시설봉사	자연보호	불우이웃 돕기	기타
건수	101	0	51	2	39	9
인원	341	0	145	50	96	50

- 또한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현황을 직위별로 살펴보면, 총 4,519명 중 대장 52명, 부대장 41명, 지역대장 114명, 부장 94명, 반장 647명, 대원 3,571명이 활동 중에 있음.

[표] 서울시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 현황 (단위:명)

구분 \ 직 위	계	대장	부대장	지역 대장	부장	반장	대원
계	4,519	52	41	114	94	647	3,571
본대 의용소방대	1,609	27	41	0	94	93	1,354
지역 의용소방대	2,339	0	0	114	0	465	1,760
전문 의용소방대	571	25	0	0	0	89	457

■ ‘부장·반장’의 임명기준에 대한 명문화 관련 의견(안 제7조의2)

- 안 제7조의2 신설조항은, 현행 조례 제7조(대장 등의 임기)<sup>3)</sup>에 의용소방대 조직 내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과 관련해서는 그 임기 및 임명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,
- 부장·반장에 대한 임명기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직의 운영상 효율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대원 간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임.

3) 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 
 ② 지역대장, 전문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.

[표] 개정안 주요골자(안 제7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제7조의2(부장·반장의 임명 기준) 대원에서 반장,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,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그동안 동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이 소방관서 별로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의용소방대 조직 및 임무와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이 부족한 대원이 임명되거나 혹은 교육 및 훈련 참여 실적이 저조한 대원이 임명되는 등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었음.
- 이에 본 개정안은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고, 소방 활동 사항을 고려해 임명토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고 숙달된 대원이 간부로서 활동하도록 하여 조직의 융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.

**[붙임] 1. 소방청 권고사항**

# [붙임] 1. 소방청 권고사항

국민의 생명·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

## 소방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개정 필요에 따른 시·도 자치법규 개정 권고

### 1. 관련문서

- 가. 화재대응조사과-1529(2021.12.24)호 '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(안) 의견수렴 알림'
- 나. 화재대응조사과-528(2022.1.19)호 '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신설(안) 의견수렴 결과 알림'
- 다. 화재대응조사과-801(2022.2.3)호 '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시·도 자치법규 개정(안) 의견수렴 알림'

2. 위 호와 관련하여, 시·도 의견수렴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정(안)에 대하여 알려드리니, 시·도에서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'22년 중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정이유 : 속천원 의용소방대원의 직책 임명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긍정적·합리적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중요내용 : 불임참조

다. 신·규조류대비표 : 불임참조

**붙임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시·도 자치법규 개정(안) 알림 1부 끝.**



# 의소대원 직책 임명 기준 시·도 자치법규 개정안 알림

## □ 개정이유

- 숙련된 의소대원의 직책 임명은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공정성·합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(안)을 추가함.
  - 대원 → 반장(3년 이상), 반장 → 부장(3년 이상)
-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시 「의용소방대법」 제7조(임무) 및 제13조(교육 및 훈련) 활동 사항을 고려하도록 추가함.
-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, 신규로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예외 규정을 추가함.

## □ 신·구조문 대비표(예시)

현 명	개 정 안
<신 설>	제6조의2(반장·부장의 임명 기준) 대원 에서 반장,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, 법 제7조 및 제13조 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 이 없거나,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□ 향후계획

- 시·도 자치법규(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) 개정 ('22년)